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(서명옥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503

발의연월일: 2024. 11. 12.

발 의 자:서명옥·백종헌·박준태

서천호 • 배준영 • 박정하

조정훈 · 김석기 · 강선영

강명구 · 김용태 · 강대식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음주운전, 주취폭력 등 음주폐해로 인해 국민적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. 특히, 음주폐해 중 본인의 생명 외에도 상대방의 생명 까지 위협하는 음주운전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음.

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, 관대한 음주문화로 인해 음주운전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. 우리나라에서는 한 해 약 13만 건의 음주운전이 적발되고 있으며, 이 중 5만 5,000여명은 2회 이상의 상습 음주운전으로 적발됨.

이에 음주운전 등의 음주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, 음주폐해예방에 대한 조사·연구 또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, 국민건강증진사업을 위해 설치된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절주교육 및 광고, 음주폐해예방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음주운전을 포함한 음주폐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(안 제8조의

3, 제25조).

법률 제 호

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민건강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의3의 제목 "(절주문화 조성 및 알코올 남용·의존 관리)"를 "(절주문화 조성·음주폐해 예방 및 알코올 남용·의존 관리)"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"조성"을 "조성·음주폐해 예방"으로 한다.

제25조제1항제1호 중 "지원"을 "지원, 절주교육 및 광고, 음주폐해 예방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8조의3(절주문화 조성 및 알코	제8조의3 <u>(절</u> 주문화 조성·음주폐		
<u>올 남용·의존 관리)</u> ① 국가	해 예방 및 알코올 남용ㆍ의존		
및 지방자치단체는 절주문화	<u>관리)</u> ①		
<u>조성</u> 및 알코올 남용·의존의	조성・음주폐해 예방		
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노력하			
여야 하며, 이를 위한 조사 • 연			
구 또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			
다.			
②・③ (생 략)	②·③ (현행과 같음)		
제25조(기금의 사용 등) ① (생	제25조(기금의 사용 등) ① (현행		
략)	과 같음)		
1. 금연교육 및 광고, 흡연피해	1		
예방 및 흡연피해자 <u>지원</u> 등	<u>지원, 절주</u>		
국민건강관리사업	교육 및 광고, 음주폐해 예방		
2. ~ 12. (생 략)	2. ~ 12. (현행과 같음)		
②・③ (생 략)	②・③ (현행과 같음)		